

모델 숙박 약관

국진 제 416 호 1985 년 12 월 23 일
2001 년 1 월 24 일
2007 년 10 월 23 일
2010 년 4 월 22 일
최종개정 2011 년 9 월 1 일

(적용 범위)

- 제 1 조 당 호텔 이 숙박 손님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되는계약은 이 약관이
결정하는 것에 의한 것으로 하고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
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.
2. 당 호텔 이 법령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계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
관계없이 그 특별계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
(숙박 계약의 신청)

- 제 2 조 당 호텔 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 이 알려 주셔야 합니다.
- (1)숙박자명
(2)숙박일 및 도착예정 시각
(3)숙박 요금 (원칙으로서 특별 표시 제 1 의 기본숙박료에 따른다.)
(4)기타 당 호텔 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
2. 숙박 손님이 숙박 중에 전항 제 2 호의 숙박일을 넘어서 숙박의 계속을 제의했을 경 우 당 호텔은 그
제안이 된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 로서 처리합니다.

(숙박 계약의 성립 등)

- 제 3 조 숙박 계약은 당 호텔 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 다 단 당 호텔 이
승낙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2.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 (3 일을 넘을 때는 3 일간) 의 기본 숙박료를
한도로 당 호텔 이 정한 신청액을 당 호텔 이 지정하 는 날까지 지불받습니다.
3. 신청액은 우선 숙박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에 총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
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 다음으로 배상금의 순서로 총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 12 조의
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급 시에 반환합니다.
4. 제 2 항의 신청액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 이 지정하 는 날까지 지급해 줄 수 없을 경우는 숙박
계약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액의 지급기일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당 호텔 이 그 취지를
숙박 손님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한한 다.

(신청액의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별계약)

- 제 4 조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 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액의 지급을 필요로 하지
않는 것으로 하는 특별계약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
2.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있어서 당 호텔 이 전조 제 2 항의 신청액의 지급을 추구하지
않았을 경우 및 당해 신청액의 지급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는 전항의 특별계약에 따르는
것으로서 취급합니다.

(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)

- 제 5 조 당 호텔 은 그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.
- (1)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.
(2)만실 원 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.
(3)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 에 어긋나는 행위를
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.
(4)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a 내지 c에 해당된다고 인정됐을 때.
a 폭력 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(1991 년 법률 제 77 호) 제 2 조
제 2 호에 규정된 폭력 조직(이하 '폭력 조직' 이라 함) 같은 조
제 2 조 제 6 호에 규정된 폭력 조직원(이하 '폭력 조직원' 이라 함), 폭력 조 직 준구성원 또는
폭력 조직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
b 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
c 임원 가운데 폭력 조직원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
(5)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
(6)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됐을 때.
(7)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이
요구됐을 때.
(8)천재 시설의 고장,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.
(9)효고현 조례 제 10 조 의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할 때.

(숙박 손님의 계약해제권)

제 6 조 숙박 손님은 당 호텔 에 신청하고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2. 당 호텔은 숙박 손님에 의한 사유로 숙박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 (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 이 신청액의 지급기일을 지정해서 그 지급을 추구했을 경우이며 그 지급보다 전에 숙박 손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 를 제외합니다.) 는 별표 제 2 에 열거하는 것에 의해 위약금을 신청하여 받습니다.
단 당 호텔 이 제 4 조 제 1 항의 특별계약에 응했을 경우는 그 특별계약으로 숙박 손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 이 숙박 손님에게 통지했을 때에 한정합니다.
3. 당 호텔은 숙박 손님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(미리 도착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그 시각을 지난 시각) 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 손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.

(당 호텔 의 계약 해제권)

제 7 조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

- (1)숙박 손님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어긋나 는 행위를 하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받을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을 했 을 때.
- (2)숙박객이 다음 a 내지 c에 해당된다고 인정했을 때.
 - a 폭력 조직, 폭력 조직원, 폭력 조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 조직 관계자 기타 반 사회적 세력
 - b 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
 - c 임원 가운데 폭력 조직원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
- (3)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
- (4)숙박 손님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했을 때.
- (5)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이 요구됐을 때.
- (6)천재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.
- (7) 효고현 조례 제 10 조 의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할 때.
- (8)침실에서 자기 전 담배 피우기,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못된 장난, 기타 당 호텔 관 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 (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.) 에 따르지 않을 때.
2. 당 호텔 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 손님이 아직 받지 않았던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

(숙박등록)

제 8 조 숙박 손님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의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.

- (1)숙박객의 성명, 연령, 성별, 주소 및 직업
- (2)외국인에게 있어서는 국적, 여권번호, 입국지 및 입국 년 월 일
- (3)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
- (4)기타 당 호텔 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
2. 숙박 손님이 제 12 조의 요금의 지급을 여행자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들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.

(객실의 사용 시간)

제 9 조 숙박 손님이 당 호텔 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로 합니다. 단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는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2.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사용에 따르 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추가 요금을 신청해 받습니다.
 - (1)초과 3 시간까지는 객실 요금 상당액수의 30%
 - (2)초과 6 시간까지는 객실 요금 상당액수의 60%
 - (3)초과 6 시간이상은 객실 요금 상당액수의 100%
 - (3.전항의상당액수는 기본숙박료의 70%로 합니다)

(이용 규칙의 준수)

제 10 조 숙박 손님은 당 호텔 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 이 정해서 호텔 관 내에 제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.

(영업시간)

제 11 조 당 호텔 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밖의 시설 등 이 자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된 팸플릿, 각처의 게시,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터리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.

- (1)프런트·캐서등 서비스 시간
 - a 통금시간 0:00 a.m.
 - b 프런트 서비스 7:00 a.m.-10:30 p.m.
- (2)음식 등(시설) 서비스 시간
 - a 아침 식사 7:15 a.m.-9:30 a.m.
 - b 점심 11:30 a.m.-3:00 p.m.
 - c 저녁 식사 6:00 p.m.-9:30 p.m.

- d 기타의 음식 등
 - 로비 라운지 7:30 a.m.-5:30 p.m.
 - 나이트클럽 8:00 p.m.-0:00 a.m.
 - 노래방 바 8:00 p.m.-0:00 a.m.
 - 라면점 8:00 p.m.-0:00 a.m.

(3)부대 서비스 시설 시간

- 매점 8:00 a.m.-10:00 p.m.
- 게임 코너 7:00 a.m.-11:00 p.m.

2.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. 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

(요금의 지불)

제 12 조 숙박자가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용은 별표 제 에 열거하는 것에 따릅니 다.

2.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지급은 통화 또는 당 호텔 이 인정한 여행자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 손님의 출발 시 또 는 당 호텔 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지급해야 합니다.
3. 당 호텔 이 숙박 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했는데 숙박 손 님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신청해 받습니다.

(당 호텔 의 책임)

제 13 조 당 호텔 은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되는 계약의 이행 시 또는 그것들의 불이행에 의해 숙박 손님에게 손해를 주게 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 그 것이 당 호텔 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2. 당 호텔 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도록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

(계약한 객실의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)

제 14 조 당 호텔 은 숙박 손님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 손님의 양해를 얻고 할 수 있는 한 같은 조건으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 하는 것으로 합 니다.

2. 당 호텔 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수의 보상료를 숙박 손님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.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당 호텔 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(기탁물 등의 취급)

제 15 조 숙박 손님이 프론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또는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일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 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 이 그 종류 및 가 액의 명고를 요구했을 경우에 숙박 손님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 은 30 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2. 숙박 손님이 당 호텔 내에 가지고 들어온 물품 또는 현금 또는 귀중품은 프 룰트에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 호텔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당 호텔 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숙박 손 님에게서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 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30 만엔을 한도로서 당 호텔 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(숙박 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)

제 16 조 숙박 손님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 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 에 당 호텔 이 허락했을 때에 한해서 책임을 가지고 보관하고 숙박 손님이 프 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줍니다.

2. 숙박 손님이 체크아웃하고 나서 숙박 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 에 잊고 두고 갔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밝혀졌을 때는 당 호텔 은 당해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동시에 그 지시를 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.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을 때 또는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 일간 보관하 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
3. 전 2 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 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 관 의 책임은 제 1 항의 경우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항은 동조 제 2 항의 규 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.

(주차의 책임)

제 17 조 숙박 손님이 당 호텔 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 에 불구하고 당 호텔 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지 않습니다.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 해를 주었을 때는 그것에 배상합니다.

(숙박 손님의 책임)

제 18 조 숙박 손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 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해 숙박 손님은 당 호텔 에 대하여그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.

별표 제 1 숙박요금 등의 내역 (제 2 조 제 1 항 및 제 12 조 제 1 항 관계)

| | | 내역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| 숙박요금 | ① 기본 숙박료 (객실(및 객실+조식 등의 음식료)) ② 서비스료 (①× 15%) |
| | 추가요금 | ③ 추가음식 (①에 포함된 것은 제외) ④ 서비스료 (③× 15%) |
| | 세금 | ㄱ 소비세 ㄴ 입탕세(온천지역만 해당) |

- 비고 1 기본 숙박료는 프런트 에 게시한 요금표에 따릅니다.
 2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가 대상이며 어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 등을 제공한 때는 어른 요금의 70% , 어린이용 식사와 침구를 제공한 때는 50% , 침구만 제공한 때는 30%를 청구합니다.
 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유아는 1,000 엔화를 청구합니다.

특별 표시 제 2 위약금 (제 6 조 제 2 항 관계).....여관용

| 계약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 계약 신청인수 | 불박 | 당일 | 전날 | 2일전 | 3일전 | 5일전 | 6일전 | 7일전 | 8일전 | 14일전 | 15일전 | 30일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14 명까지 | 100% | 100% | 50% | 30% | 30% | | | | | | | |
| 15-30 명까지 | 100% | 100% | 50% | 30% | 30% | 30% | | | | | | |
| 31-100 명까지 | 100% | 100% | 80% | 50% | 30% | 30% | 20% | 20% | 10% | 10% | | |
| 101 명이상 | 100% | 100% | 80% | 50% | 50% | 30% | 30% | 30% | 15% | 15% | 10% | 10% |

- 주) 1. %은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 2. 계약일수가 단축했을 경우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 없이 1 일분(첫날) 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.
 3. 단체객 (15 명이상) 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 일전 (그 날보다 뒤에 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그 받아들인 날) 에 있어서의 숙박 인수의 10% (단수가 났을 경우에는 일단락 짓는다.) 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 약금은 받지 않습니다.